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983
----------	------

2025. 9. 1.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1. 박 석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 8. 14.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9. 1.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박 석 의원)

1. 제안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대응 절차 및 통지·신고 시한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함.
-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일선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유출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6호).
- 나. 각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담당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5조제4항까지).
- 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 (안 제7조제1항).
- 라.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신고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 (안 제7조제3항).
- 마.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명정보 전담 결합기관 지정 근거 조항을 삭제함 (안 제13조의2).
- 바. 기타 정비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의2,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2조의1, 안 제13조).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지 및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내 개인정보 취급·책임·처리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가명정보 결합 등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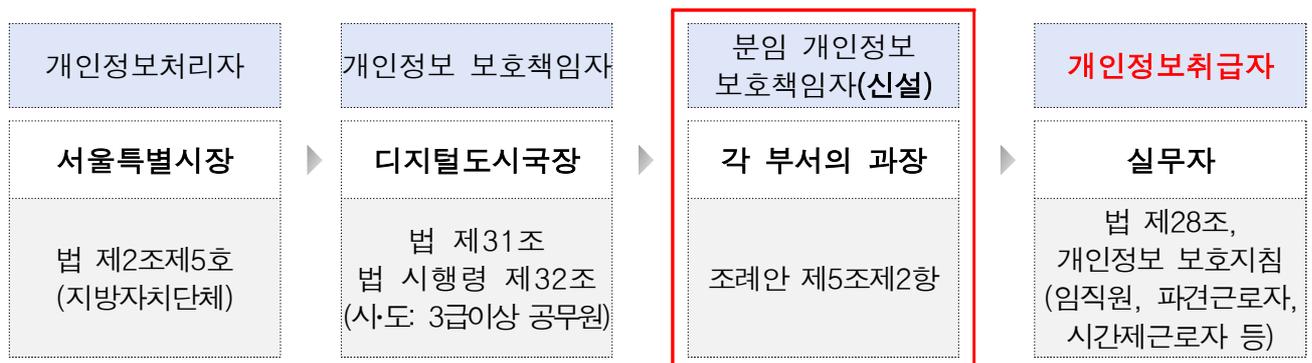
① 개인정보 관리체계

-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개인정보의 보호는 실무자인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상 명확히 정의하지 않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법 제 28조1)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 ----- 개인정보취급자----- ----- ----- ----- ② (현행과 같음)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도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 또한, **안 제5조**는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하 ‘**분임책임자**’)직책을 신설하고,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자로 임명토록 하면서,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업무를 체계화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u>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u>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 ----- <u>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u>----- -----.</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p> <p>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관련내용 보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³⁾는 디지털도시국장 1명에 불과하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나,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이 총 398개, 정보의 수는 약 7억 건에 달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와 책임을 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분임책임자가 신설되면, 부서 단위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강화로 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보유 개인정보 현황 >

구 분	소 계	본 청	사업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189	142	47
개인정보 파일 (개)	398	298	100
정보 수 (건)	704,886,831	682,309,082	22,577,749

* 출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 제출 자료, '25.5월 기준

- 다만, 해당 제도가 신설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임책임자 소관의 각 부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유형별로 체계적인 지원(관리방안·관계법령교육·전산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특별시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예시도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대응 방안 구체화(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7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초 '지체 없이' 유출통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 및 신고해야 하던 사항을 시행령 개정⁴⁾사항을 반영하여 ‘72시간 이내’로 규정⁵⁾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u>지체 없이</u>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 ----- ----- <u>72시간 이내</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u>지체 없이</u>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u>경우 등 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할 때에는</u> ----- ----- ----- <u>72시간 이내</u> ----- -----.

- 다만,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약 1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5건이 ‘담당자 부주의’의 사유인 만큼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③ 기본계획 수립범위

○ 안 제4조의2는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이하 “자치구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개인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12.]

5) 시행령에서 ‘72시간 이내’로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나, 최소한의 시간 범위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정보처리자⁶⁾의 권한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u>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확정한다.	② ----- <u>서울특별시</u> ----- ----- ----- -----.

-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2019년도부터 두 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3년도에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자치구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대신 의견수렴만 거쳤으며⁷⁾, 분량도 17쪽의 간략한 보고서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기본계획의 시·공간적 범위, 방향, 실행과제 등 내용측면에서의 내실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계획 내용의 종합·조정·제시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차수별 비교표 >

구분	제1차 기본계획(2019년 수립)	제2차 기본계획(2023년 수립)
문서 성격	연구·진단 보고서형(277쪽) → 배경·분석·문제 진단	정책·행정 실행계획형(17쪽) → 추진계획·성과관리
수립주기	최초	4년
현황분석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기관별 운영 현황, 설문조사 결과	1차 계획 성과분석만 존재, (사고 현황·설문조사 등 세부 통계· 현황 진단은 제외)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은 상위법상 서울시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로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기관의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

	등 세부 진단 자료 수록	
중기 로드맵	3개년 중기 로드맵 제시 (과제별 추진 일정과 단계적 이행 계획)	과제별 연도별 계획만 존재
기관별 조사·분석	자치구·투출기관별 현황조사, 개인 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기관별 응답 분석 등 기관 단위 세부 분석	기관별 현황조사 내용 삭제, 전반적 전략·과제 중심으로 단순화

④ 가명정보의 처리

- **안 제13조의2제4항**은 법령상 결합전문기관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⁸⁾에 따라, 시장이 가명정보⁹⁾ 처리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28조의3의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 현재까지 서울시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적이 없으며, 상황 발생시 국가가 지정한 기관¹⁰⁾에서 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삭제하여도 가명정보처리 업무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¹¹⁾.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함.

10) 법에 따라 중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20여개(통계청,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삼성 SDS, SK 등)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상세리스트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 또한, 시 내부 보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자체 결합도 가능¹²⁾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AI 분석 활용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가명정보 결합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민안전, 긴급복지 등 주요 상황에 능동적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9건의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졌으며, 이 중 내외부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했음.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를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회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

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관련내용 보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72시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등 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지체 없이”를 “72시간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의1을 제12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를 “개인정보취급자”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u></p>
<p>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은 <u>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서울특별시</u> ----- ----- ----- -----.</p>
<p>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 ----- -----.</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09 477 379 517"><신설></p> <p data-bbox="209 813 379 853"><신설></p> <p data-bbox="172 1547 783 1590">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p> <p data-bbox="209 1615 783 1926">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u>지체 없이</u>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 data-bbox="209 1951 504 1993">1. ~ 5. (생략)</p>	<p data-bbox="847 275 1422 452"><u>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u></p> <p data-bbox="847 477 1422 788">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회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p> <p data-bbox="847 813 1422 1057">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data-bbox="847 1081 1422 1527"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u>관련내용 보고</u>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p data-bbox="810 1547 1422 1590">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p> <p data-bbox="847 1615 1422 1926">① ----- ----- ----- <u>72시간</u> 이 내에 ----- -----.</p> <p data-bbox="847 1951 1235 1993">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u>지체 없이</u>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경우 등 법 시행령 제 40조에 해당할 때에는</u> ----- ----- ----- ----- <u>72시간 이내에</u> ----- ----- -----.</p>
<p><u>제12조의1(소위원회) ① ~ ⑥ (생략)</u></p> <p>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u>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u>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p>	<p><u>제12조의2(소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u></p> <p>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 ----- <u>개인정보취급자</u> ----- ----- ----- -----.</p>
<p>② (생략)</p> <p>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u>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위원회 심의</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u>를 거쳐 법 제28조의3의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u>	